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

바젤협약 발효 ... 협약 비가입국과 교역 불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 5월29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발효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이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재활용을 위한 순도가 높은 고철과 고지 등의 수입은 규제가 없어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상공부자원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상의 국가간 이동통제대상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협약 비가입국가와 교역을 할 수 없게되고 협약 가입국가와의 교역은 상대국의 수출입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경유국이 있을 경우 경유국의 경유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게 됐다.

바젤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구 분	폐 기 물 종 류	구 분	폐 기 물 종 류
Y 1	병원·의료센터 및 의원에서 의료행위로 부터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Y 17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Y 2	의약품의 제조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Y 18	금속 및 플라스틱의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Y 3	폐의약품	Y 19.20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Y 4	살충제 및 식물약품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 21.22	금속 카보닐, 베릴륨 및 그 화합물
Y 5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 23.24	6가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Y 6	유기용제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 25	아연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Y 7	시안화물을 함유한 열처리와 담금질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 26	세레늄 및 그 화합물
Y 8	원래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유	Y 2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Y 9	기름류 혼합물, 탄화수소류와 물의 혼합물, 유제로서 폐기되는 것	Y 28	안티몬 및 그 화합물
Y 10	폴리클로로다이티드비페닐(PCBs), 폴리클로로다이티드테라페닐(PCTs), 폴리브로미다이티드비페닐(PBBs)을 함유하거나 이러한 물질로 오염된 폐기물	Y 29	텔루리움 및 그 화합물
Y 11	정제·증류 및 기타 열분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페타르 잔재물	Y 30	수은 및 그 화합물
Y 12	잉크·염료·안료·페인트·락카·니스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Y 31	탈륨 및 그 화합물
Y 13	수지·라텍스·가소제·아교/접착제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Y 32	납 및 그 화합물
Y 14	조사·연구 또는 교육활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아니한 신종의 폐화학물질	Y 33	불화칼슘을 제외한 무기불소화합물
Y 15	다른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폭발성 폐기물	Y 34	무기시아나물
Y 16	사전현상 및 인화물질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	Y 35	산성용액 및 고체상태의 산류
		Y 36	염기성용액 및 고체상태의 염기류
		Y 37	석면(먼지 및 섬유)
		Y 38	유기인화합물
		Y 39	유기시아나물
		Y 40	페놀 및 클로로페놀류를 포함한 페놀화합물
		Y 41	에테르
		Y 42	할로겐족 유기용제류
		Y 43	할로겐족 이외의 유기용제류
		Y 44	폴리클로로다이티드디벤조유한류
		Y 45	폴리클로로다이티드디벤조파라디옥신류
			이 부속서에 언급된 물질(예 Y39, Y41, Y42, Y43, Y44) 이외의 유기할로겐 화합물

협약상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인 폐기물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폐기물과 가정폐기물, 수출·수입 및 경유국가가 국내법으로 유해하다고 정하는 폐기물이다.

그러나 상공부관계자는 협약발효에도 불구하고, 국내업계가 원자재로 수입하고 있는 순도가 높은 고철과 폐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규제대상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유독폐기물임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을 시행키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92년12월8일 제정했다.

이 법령에 의해 우리나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또한 국가간 이동통제대상인 폐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할 경우 상공부장관이 수출국정부로부터 수

입동의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해 수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수입자에게 수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는 상공부장관이 수입국 정부로부터 수입동의를 얻고 수출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상 정의된 유해폐기물 및 가정폐기물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시키고 우리나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정의하기 위해 앞으로 환경처가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종류를 상공부와 협의,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1994/6/13>